

외국인유학생 취업관련 정보

■ 재학 중인 경우

▶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유학(D-2) 또는 어학연수(D-4-1, D-4-7) 자격 소지자로서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 허가를 받아 시간제 취업을 할 수 있다.

[시간제 취업 자세히 보기](#)

■ 졸업(예정)인 경우

▶ 취업자격으로의 변경(E-1~E-7)

교수(E-1)~특정활동(E-7) 각각의 취업자격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 취업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취업직종과 전공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
- 대학교 졸업(예정)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 취업직종과 전공 관련성 필요없음

[취업자격으로의 변경 자세히 보기](#)

▶ 취업·창업희망자, 구직자격으로의 변경(D-10)

국내 기업·단체 등에 대한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하며,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을 할 경우 구직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구직자격으로의 변경 자세히 보기](#)

▶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으로의 변경(F-2-7)

국내대학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고 국내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연령·학력·소득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면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으로의 변경 자세히 보기](#)

▣ 외국인유학생 지원정책 보도자료

(2015.2.10. 영문 보도자료) 국내대학 졸업 외국인유학생의 창업과 취업을 위한 비자발급 확대

http://www.hikorea.go.kr/pt/NtcCotnDetailR_en.pt?pageSpec=&targetRow=&lafjOrderBy=&sRange=&sKeyword=&bbsGbCd=BS10&bbsSeq=4&ntccttSeq=15&pageCode=list&langCd=EN&bbsNm=Press+Room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1. 기본원칙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 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에 해당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격별 개별 지침 적용(예시 :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 회화지도강사 등)

2. 대 상

- 유학 (D-2) 및 어학연수 (D-41, D-47) 자격 소지자로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 어학연수생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는 가능)은 시간제취업허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함

3. 허용범위

<허용시간>

- (학부 및 어학연수과정) 주당 20시간 이내
 - 인증대학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은 주당 25시간 이내
- (석·박사과정) 주당 30시간 이내
- (석·박사 수료 후 논문준비생) 주당 30시간 이내
 - ※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 중 무제한(주당 허용시간 산정 시 제외)

<허용분야(예시)>

-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 ※ 중국어, 일본어, 기타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준용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 단, 상기 시간제 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장소변경> : 허가기간 내 고용주를 달리하여 취업 장소 변경

- 신청방법 : 취업 장소 등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학의 유학생담당자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를 직접 방문 또는 전자민원을 통해 취업 장소 등 변경 신고

<시간제 취업 허가 연장>

● 제한대상

-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70% 이하 또는 평균학점(이수학점 기준) C학점(2.0) 이하인 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간제 취업 조건(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및 취업 장소 변경 후 미 신고자

● 처리요령 :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장소는 2곳으로 한정

4. 신청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면제)
- 시간제 취업 추천서,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FIMS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

5. 시간제 취업 허가의 특례(허가 제외 대상)

-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허가제외대상 * 예시

- 유학생이 학점 취득 등을 위해 행하는 인턴십, 연구프로젝트 참여로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
- 수학중인 학교 내 조교(수업조교 포함)·도서관 사서 등 근로 장학생으로 참여하는 경우
- 가사보조인 등과 같이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일상가사보조 또는 사무보조 등에 따른 사례금 기타 보수를 받는 경우
-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조연·감정, 행사참가, 영화 또는 방송 임시(1회 및 비연속성) 출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

※ 사무소장은 활동의 형태, 보수, 기간 등을 종합적 고려, 허가 대상여부 판단

체류자격외 활동(E-1~E-7)

현재의 유학(D-2) 또는 어학연수(D-4)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전문직업(E-1~E-7)의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먼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 받아야 한다. 병행하고자 하는 활동이 전일근무 등 주된 활동인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으니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거나 출국하여 새로운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야 한다.

※ 전문직업(E-1~E-7)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취업자격으로의 변경” 참조

취업자격(E-1~E-7)자격으로의 변경

1. 자격요건(아래 ①, ②,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홍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 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 유흥업소 등에서의 흥행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이나 스포츠 분야만 허용

2.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체류자격	구비 요건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격이 요구하는 학력 및 경력, 자격증 등을 구비한 경우 변경을 허용 ▶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학원설립증 등 중에서 1~2종만 제출) ③ 경력증명서(E-1 등), 범죄경력증명서(E-2), 채용신체검사서(E-2), 자격증 사본(E-5, E-7 등),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E-5, E-7) 등
예술홍행(E-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직종이 전공과목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에게 변경 허용 ▶ 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 활동에 종사(E-6-2)하려는 경우는 불허 ▶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학원설립증 등 중에서 1~2종만 제출)

특정활동(E-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전문학사 학위소지자로서 취업직종이 전공과목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요건 불문하고 변경 허용 ▶ 국내 학사이상 학위소지자로서 취업직종이 전공과목과 관련성이 없어도 경력요건 불문하고 변경 허용 ▶ 국민대체성 및 국민고용을 감안하여 5명 미만의 국민을 고용 중인 내수 위주 업체 또는 고용 중인 E-7 자격자가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고용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첨단 산업분야 등은 주무부처 추천이 있는 경우 50% 범위 내에서 고용을 허용 ▶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금액이 고용업체에서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평균임금의 60% 미만이거나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격변경을 제한 ▶ 기타 세부사항은 특정활동(E-7)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적용 ▶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학원설립증 등 중에서 1~2종만 제출) ④ 경력증명서 ⑤ 자격증 사본 ⑥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	---

※ 특정활동(E-7) 83개 취업허용직종

구 분	직 종(코드)	비 고
전문인력 (67개 직종)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기업 고위임원(1120) 경영지원 관리자(1202) 교육 관리자(1312) 보험 및 금융관리자(1320)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1340) 정보통신관련 관리자(1350)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1390)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1411)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1413) 농림·어업관련 관리자(14901)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 운송관련 관리자(1512)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1522)	관리자 (15개 직종)

구 분	직 종(코드)	비 고
	생명과학 전문가(2111) 자연과학 전문가(2112) 물리학 전문가(21121) 화학 전문가(21122) 천문 및 기상학 전문가(21123) 사회과학 연구원(2122)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통신공학 기술자(2212)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데이터베이스 개발자(2224)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2225) 컴퓨터 보안 전문가(2226) 웹 및 멀티미디어 기획자(2227) 웹 개발자(2228)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2311) 토목공학 전문가(2312) 조경 기술자(2313) 도시 및 교통설계 전문가(2314) 화학공학 기술자(2321)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2331) 환경공학 기술자(2341) 전기공학 기술자(2351) 전자공학 기술자(2352) 기계공학 기술자(2353) 플랜트공학 기술자(23532)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섬유공학 기술자(2392) 가스·에너지 기술자(2393) 캐드원(2396) 간호사(2430) 대학 강사(2512) 기타 교육관련 전문가(25919)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2599) 법률 전문가(261) 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2620) 특수기관 행정요원(S2620) 경영 및 진단 전문가(2715) 금융 및 보험 전문가(272) 상품기획 전문가(2731) 여행상품 개발자(2732)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조사 전문가(2734) 행사 기획자(2735) 해외 영업원(2742) 기술 영업원(274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2개 직종)

구 분	직 종(코드)	비 고
	기술경영 전문가(S2743) 번역가·통역가(2812) 아나운서(28331) 디자이너(285) 영상관련 디자이너(S2855)	
준전문인력 (8개 직종)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 사무원(31215) 항공운송 사무원(31264) 호텔 접수 사무원(3922) 의료 코디네이터(S3922)	사무종사자 (4개 직종)
	운송 서비스 종사자(431) 관광 통역 안내원(43213) 카지노 딜러(43291) 주방장 및 조리사(441)	서비스종사자 (4개 직종)
숙련기능인력 (8개 직종)	농축산어업 숙련기능인(610) 동물 사육사(61395) 해삼양식 기술자(63019)	농림축산어업 숙련 종사자 (3개 직종)
	약기제조 및 조율사(7303)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74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700) 조선용접공(7430) 항공기 정비원(752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개 직종)

유학(D-2)자격 소지자의 구직(D-10) 자격으로의 변경

1. 허용대상

- ① 국내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생
- ②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거나 학술연구기관 등의 연구 과정을 수료(예정자 포함)한 유학생
- ③ 국내·외 학사이상의 학위(학위 수여예정자 포함)를 소지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하려는 자

2. 제한대상

- 최근 1년 이내 고용계약기간 중 고용주 귀책사유 없이 임의로 퇴직한 후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선량한 고용주를 보호하고, 구직제도의 남용 방지를 통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필요

3. 제출서류

구직활동자	
● 유학(D-2) 자격 체류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② 학력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③ 구직활동계획서④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기술창업활동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② 학력증명서(학사 이상)③ 기술창업계획서④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 등 출원서 사본 및 접수증(해당자)⑤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교육참여 확인서(해당자)

4. 신청요령

- 신분이 변동(예정 포함)되는 즉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신청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으로의 변경

1. 신청대상

● 신청가능 체류자격

체류자격	비 고
D-2, D-10	국내대학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고 국내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 한함

● 체류기간 요건 : 신청대상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합법 체류 중이어야 함

- 단, D-2나 D-10 자격에서 신청이 가능한 다른 체류자격(E-1~E-7 등)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체류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2. 허가 요건

● 점수표에 의한 평가항목별 취득 점수의 합계가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함

- 평가항목별 배점(총 120점) 및 기준 점수(80점)

구분 (배점)	공통항목(90점)				가감점항목(30점)		총점 (120점)	기준점수 (80점 이상)
	연령(25)	학력(35)	한국어 능력(20)	현소득 (10)	가점(30)	감점(-5)		
점수								

구분	18-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50세	51세 이상
배점	20	23	25	23	20	18	15
기준	• 여권상 생년월일 (평가일 기준)						

학력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고졸
	이공계/ 2이상	인문계	이공계/ 2이상	인문계	이공계/ 2이상	인문계	이공계/ 2이상	인문계	
배점	35	33	32	30	28	26	25	23	15
기준	•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고등학교졸업자만 해당)								

한국어 능력	사회생활에서 충분한 의사소통 (고급)		친숙한 주제 의사소통 (중급)		기본적인 의사소통 (초급)	
	6급	5급	4급/4단계	3급/3단계	2급/2단계	1급/1단계
배점	20	18	16	14	12	10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국제교육원장 발급 한국어능력시험(S-TOPIK) 성적표상의 급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상의 한국어과정 수료단계(1-4단계) 					

연간 소득	1억원 이상	9천만-1억원 미만	8천만-9천만 원미만	7천만-8천만 원미만	6천만-7천만 원미만	5천만-6천만 원미만	4천만-5천만 원미만	3천만-4천만 원미만	2천만-3천만 원미만	2천만 원미만
배점	10	9	8	7	6	5	4	3	2	1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 근무처에서 원본 확인하여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상의 최근 1년간의 명목상 총소득 									

가점 항목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					한국 유학 경험					국내 사회봉사 활동			해외 전문 분야 취업 경력		
		500만 원 이상	400-5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한국어연수	3년 이상	2-3년 미만	1-2년 미만	3년 이상	2-3년 미만	1-2년 미만
배점	10	5	4	3	2	1	5	4	3	2	1	5	3	1	5	3	1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자세한 사항은 www.socinet.go.kr 참조)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 : 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세 납세실적 증명서 한국유학경험 : 학위증 또는 수료증(한국어연수만 해당), 출입국정보시스템, 유학생 정보시스템 국내 사회봉사활동 : 해당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발급한 사회봉사활동증명서 (최근 3년간의 활동내역을 합산하고 연간 최소 6회 총 50시간 이상 활동 시 인정) 해외전문분야 취업경력 : 해당 분야의 해외 공공기관·단체·업체 등의 대표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 (정규직원으로 재직한 기간만 인정) 																

검점 항목	벌금 등 처분				불법체류
	신청인			동반가족 또는 피초청자	동반가족 또는 피초청자 중 현 불법체류자 + 최근 2년 이내 3개월 이상 불법체류 후 출국자
	2회 또는 합계 300만원이상	1회(100-300 만원 미만)	1회(100만 원 미만)	2회 또는 합계 300만 원이상	
배점	- 3	- 2	- 1	- 1	- 1
기준	• 범죄경력조회시스템, 출입국정보시스템 등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위반사항만 적용)				

3. 제출 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고등학교 졸업자만 해당)
- ③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 ④ 소득관련 입증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⑤ 고용계약서
- ⑥ 가족관계 입증서류(배우자 및 자녀)
- ⑦ 기타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확인서, 소득세 납세 입증서류, 사회봉사활동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점수표상 가점인정에 필요한 증빙자료(해당사항 있는 경우)